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문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9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문성호, 강석주,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지,
남궁역, 윤종복, 이은림,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18명)

1. 주문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일찍이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철도안전법 등 관련 근거에 따라 무질서 행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는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음
- 하지만 지속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무단 역사 및 지하철 점거로 인한 운영 방해 행위를 비롯, 지하철보안관에게는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 및 무질서 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제안 이유라고 할 것임. 경찰에 신고하는 수동적인 대처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및 교통권을 지키는 것에 분명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자체적인 사법경찰권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하철보안관 및 도시철도 운영인력 등에 사법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서울 지하철은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지만 지하철 및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는 물론, 전장연의 지속되는 무단점거로 인해 운영에 큰 방해를 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하철보안관에 행해지는 폭력 행위들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권 침해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하여금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지하철 내 무질서 및 불법 점거와 같은 방해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전장연의 불법 점거 및 지하철 운행 방해 행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이 없는 지하철보안관으로 각종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 및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최근에는 전장연의 무질서 행위를 제재하려는 지하철보안관이 전장연의 폭력 행위로 인해 경상 등, 폭행 사건도 발행하고 있음
-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가직공무원의 신분으로 사법경찰권을 통해 철도범죄 예방과 단속 및 즉각적인 현장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울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각종 무질서 및 불법적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4.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은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지만 성범죄·폭행·노숙인 문제 등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와 질서문란 행위들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더해 최근 공사 내부에서 직접 구축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매뉴얼의 구축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지하철 내 각종 범죄와 물품판매, 불법전단지 배포 등 무질서 행위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장연의 지속적인 무단 역사 점거 및 열차 운행 방해 등의 무질서 행위가 하루가 멀게 발생하고 있어 해당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보안관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리 인력에 경찰사법권 부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덧붙여 전장연과 같이 무질서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에 폭력으로 맞서는 등, 지하철보안관에게 있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권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최근에는 오히려 지하철보안관이 경상을 입는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가직공무원의 신분으로 사법경찰권을 통해 철도범죄 예방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도시철도를 관리하

는 지하철보안관 등에는 사법경찰권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무질서 행위와 시민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지하철보안관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직원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하철보안관에 대한 사법경찰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라.

둘째,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임직원 및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

2025.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